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의 표시에 관한

화장품위원회 공고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22조 두번째 단락 및 세번째 단락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화장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국내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의 라벨은 화장품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서 눈에 잘 띄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부착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화장품의 제품명과 상품명. 다른 글자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2) 화장품의 종류 또는 유형은 "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사용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식품의약품청이 정한 성분표에 따라 함량이 높은 순으로 나열해야 한다.

화장품 제조 시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색소 또는 농도가 1% 미만인 물질의 경우, 농도가 1% 이상인 물질 목록 다음에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알코올 농도는 부피 기준 백분율(volume by volume, V/V)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부피 기준 알코올 70% 이상"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4) 사용법: "손으로 20초 이상 충분히 문지른 후 건조 시키십시오."라고 표시한다.

(5) 제조자명과 주소(국내 제조 화장품의 경우), 수입자명과 주소 및 제조자명과 원산지(수입 화장품의 경우)

(6) 순중량

(7) 배치 번호 또는 문자

(8) 제조일(월/년 또는 년/월)

(9) 유통기한(월/년 또는 년/월)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기타 문구

(10) 다음과 같은 위험 경고:

"경고:

40°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자극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경고에는 다른 소비자 보호 문구도 포함시킬 수 있다. 화장품위원회의 경고 관련 공고에 따른 경고 대상 물질이 제형에 포함된 경우 해당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반복적인 경고의 경우, 전술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11) 식품의약품청에서 고지한 등록 번호.

제2조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라벨 문구는 태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화장품 제조 시 사용된 성분의 명칭을 제외한 다른 문구나 외국어를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성분명은 각각 태국어, 영어 단어의 태국어 음역 또는 영어로 표시할 수 있으며, 혼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나노 입자가 화장품 제조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성분 명칭 뒤에 "(nano)"를 표시해야 한다.

제3조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용기가 작고 라벨 표시 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화장품의 경우, 최소한 제1조 제1항, 제3항 세번째 단락,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에 명시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제1조에 명시된 정보는 첫번째 단락에 명시된 규정 외에, 화장품과 함께 제공되는 삽입 광고, 문서 또는 설명서에도 표시해야 한다.

제4조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수입 시점에 화장품 검사 지점에서 용기 또는 포장에 태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요구사항에서 면제되지만, 관련 공무원이 수입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어 라벨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 수출 전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라벨은 교역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라벨에는 언어와 관계없이 문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마크, 로고, 상표 또는 등록상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라벨 상의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화장품의 명칭, 성분, 비율, 양 또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또는 잘못 기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해당 물질이 제품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문구에 표시된 효능을 증명할 수 없는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 전술한 문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마크 또는 상표에서 화장품 내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암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화장품의 이점, 품질 또는 특성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로, 과장하여 또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여 부당한 믿음을 유발하는 동음이의어 또는 동형이의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태국의 문화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태국어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성, 언어 및 폭력과 관련하여 사회, 문화, 도덕, 전통 또는 행동에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본 공고 시행일 이전에 라벨을 작성한 화장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본 공고를 준수하도록

라벨을 수정해야 하며, 본 공고 시행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기존 라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12월 2일 공고

키앗티품 웡라짓

보건부 상임차관

화장품위원회 위원장